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504241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안진호, 오종윤

피고 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석수, 김상우, 이송호

변론 종결 2022. 12. 20.

판결 선고 2023. 2. 2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피고 A는 2022. 3. 27.까지, 피고 B는 2022. 3. 11.까지, 피고 C는 2022. 3. 23.까지, 피고 D는 2022. 3. 26.까지 각 연 8.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및 연대보증 약정과 대출금채무의 발생

1) 원고는 'E'의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주식회사 G(대표이사 B), 주식회사 H(대표이사 C), 주식회사 I(대표이사 D)에게 이들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발전소와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위 4개 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7. 8. 21.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4개 회사가 각 54억 9,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대출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대출약정서는 F의 대출약정서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서 다른 3개 회사의 대출약정도 이와 동일하다).

[대출약정서]

1. 당사자들

- 차주: F
- 대주: 중소기업은행 ['E'의 신탁업자]
- 대리기관: J 주식회사

2. 대출약정금 및 대출방식, 이자 및 연체이자

- 총 대출약정금: 5,490,000,000원
- 대출방식: 차주가 위 대출약정금을 한도로 이 사건 사업 소요자금 등을 분할하여 인출요청하는 방식

○ 이자 및 연체이자: 이자는 연 4.70% 고정금리,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4.0%를 가산한 이자율

3. 최초 인출 이후 인출요청 방식(제3조 제2항)

인출선행조건(아래 기재)의 충족을 전제로, 차주가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 및 필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기성내역서, 청구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서 '별첨 가-1'의 양식으로 된 인출요청서(이하 '인출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인출하여야 할 금액을 대리기관에게 요청

4. 최초 인출 이후 인출절차(제3조 제2항)

대리기관은 차주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출약정금의 한도 내에서 매회 인출금액을 결정하여 대주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서 '별첨 가-2'의 양식으로 된 인출통보서를 발급하며, 대주는 대리기관의 위 인출통보서에 기재된 금액 및 인출일자 또는 기간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대출금을 인출

5. 자금의 관리(제6조)

가. 전력판매대금수입계정(제1항)

차주는, 사업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및 기타 사업으로 인한 수입 등 운영기간 중 이 건 사업으로 인한 차주의 수입을 입금하기 위하여 대리기관이 지정하는 어느 금융기관의 지점에 차주의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요구불예금계정(= 전력판대매금수입계정)을 개설한다.

나. 유보계정(제3항)

차주는, 이 약정의 기간 동안, 전력판매대금수입계정 및 공급인증서매매금수입계정을 비롯한 관련계정으로부터의 이체 등 자금의 입·출금, 납입자본금, 대출금, 보험금, 부가가치세환급금, 우발채무 합의서에 따라 제공되는 금원 등의 입금과 공사비, 관리운영비, 대출원리금 기타 비용의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차주의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요구불예금계정(= 유보계정)을 대리기관이 지정하는 어느 금융기관의 지점에 개설한다.

6. 최초 인출 후 주요 인출 선행조건(제12조 제2항, 제3항)

가. 대리기관이 인출요청서와 대리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수령할 것

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 통지 또는 위 양자를 갖추므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할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차주의 재정상태나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사태(민원이나 소송 포함)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을 것

라. 차주가 해당 인출일 현재 이행하여야 할 이 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그에 따른 담보계약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중요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을 것

마. 이 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와 관련된 모든 법률적 사항이 대리기관에 만족스러울 것

7. 적극적 준수사항(제10조)

○ 중요사항의 통지(제2항)

차주는, 각각 또는 전체로서, (ㄱ)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ㄴ) 사업관련 서류와 관련한 소송이나 법적 절차 또는 중요한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사실, 재정상태 및 그 운영이나 재산에의 중요한 변화를 알게 되는 경우, (ㄷ)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 및/또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차주의 영업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소극적 준수사항(제11조)

○ 채무부담의 금지(제1항)

차주는, 허용된 부채(이 사건 대출약정서에서 허용하는 부채로서 금융관련서류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서류에 기한 부채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를 제외하고, 대리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일체의 다른 사람(개인, 법인, 공적인지 사적인지 여부를 불문한 기관이나 단체, 기타 차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채무를 포함)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기타 신용의 공여나 배상약정 기타의 조건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제13조 제1항)

가. 차주의 금융관련계약서의 불이행이나 위반이 치유되지 않고 30일이 경과한 경우[(나)호]

나. 차주가 사업관련서류에 관한 의무와 각종 의무사항(위 적극적 준수사항과 소극적 준수사항

포함)을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불이행이 치유될 수 없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고 30일이 경과한 경우[(다)호].

다. 차주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 대리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국유화, 몰수, 수용, 매각, 이전되거나 또는 달리 처분된 경우[(사)호]

라. 차주 또는 어느 담보제공자가 그가 당사자인 이 약정서,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기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타)호]

마. 대주에게 제공된 담보권이 금융관련서류상 허용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파)호]

바. 위 가.항과 나.항 이외에 대주에게 담보를 제공한 자가, 그가 당사자인 이 약정서, 담보계약서 기타 거래서류의 중요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그러한 불이행이나 위반이 치유될 수 없는 때, 또는 그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기관이 차주 또는 당해 담보제공자에게 불이행에 관하여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불이행이나 위반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차)호]

사. 차주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관련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하)호]

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정을 포함한 차주의 대주에 대한 채권이나 차주가 제공한 차주 또는 제3자 소유의 담보재산에 대하여 (ㄱ)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가압류나 가처분,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신청이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때 또는 (ㄴ)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의 착수가 있는 경우.

단, 차주가 제공한 차주 또는 제3자 소유의 담보재산 중 예금과 관련하여서는 (ㄱ)에 규정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의 발송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한다[(너)호].

10.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제13조 제2항)

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대리기관은 대주의 서면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대리기관은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주의 대출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 ② 대리기관은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대리기관 및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함을 선언할 수 있다.

단, 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 차주에 관하여 제13조 제1항 (너)호 가압류 등(= 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 사.호) 또는 같은 항 (더)호(= 파산 등)에 정한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 (너)호 단서 사유 포함), 차주에 대한 독촉, 통지 등이 없이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대리기관 및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하고, 대주의 대출의무는 중단된다.

3) 위 대출약정시 피고 A는 F의, 피고 B는 G의, 피고 C은 H의, 피고 D은 I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채무 및 그 부채채무 일체를 서면으로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고, 2022. 11. 30. 기준 대출금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피담보채무"는 위 4개 각 회사들이 위 기준일 현재 변제하지 않은 채무를, "대출원금잔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 문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실행한 대출약정액 각 54억 9,000만 원 중 원금을 기준으로 위 4개 회사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누적상환액"은 대출약정액 중 변제된 채무를 나타낸다(단위는 '원').

F	366,729,133	2,880,948,910	599,279	2,456,193,426	3,033,806,574
G	366,224,059	2,871,003,744	597,029	2,446,753,334	3,043,246,666
H	378,133,701	3,038,917,046	634,214	2,601,599,038	2,888,400,962
I	377,517,001	3,009,032,930	627,238	2,572,331,622	2,917,668,378

나. 근질권 설정 및 가압류

1) 원고는 위 대출약정 제6조에 따라 위 4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각 예금계정(= 전력판매대금수입계정, 공급인증서매매대금수입계정, 유보계정, 부채상환적립계정)을 제공받고,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예금계정상의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자를 원고로 하는 1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K은행은 2017. 12. 20. 근질권승낙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또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L와 피고 A 소유의 보통주 각 30,500주, G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M와 피고 B 소유의 보통주 각 30,500주, H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N와 피고 C 소유의 보통주 각 30,500주, I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O와 피고 D 소유의 보통주 각 30,500주에 대하여 2017. 12. 8.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3) 위 4개 회사는 2017. 8. 11.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P가 이 사건 사업시설을 시공하였는데, P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위 4개 회사를 피고 및 채무자로 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① F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7766 사건으로 공사대금 635,680,00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3채무자를 K은행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21카단81300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2021. 8. 17. K은행에 송달됨

② G

위 같은 법원 2021가합517686 사건으로 공사대금 635,800,00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3채무자를 K은행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21카단813004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2021. 8. 26. K은행에 송달됨

③ H

위 같은 법원 2021가합517709 사건으로 공사대금 635,800,00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3채무자를 K은행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21카단813003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2021. 8. 17. K은행에 송달됨

④ I

위 같은 법원 2021가합517766 사건으로 공사대금 635,680,00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3채무자를 K은행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21카단81300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1. 8. 17. K은행에 송달됨

다. 위 4개 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차입

1) P는 위와 같이 4개 회사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수급받아 그 중 일부공사를 주식회사 O(그 대표이사 C은 이 사건의 피고 3.과 동일인이다)에게 하도급주었다. 위 4개 회사는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이 경색되자 위 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2) 위 4개 회사는 2021. 8. 23. 원고의 대리기관인 J 주식회사(이하 'J'으로만 기재하고, 원고와 J을 함께 '원고 측'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고리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알리면서 원고가 대출하기로 하였던 관리운영비를 출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예금인출

1) 위 4개 회사는 P의 신청에 따라 집행된 각 가압류결정상의 청구금액이 각 635,680,000원임을 이유로, K은행에게 '가압류의 청구금액 각 635,680,000원을 초과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출금금지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K은행은 위 4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가압류된 계좌의 각 635,680,000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2021. 9. 1. 출금금지조치를 해지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위 4개 회사는 2021. 9. 13. 이후 각 가압류된 계좌에서 합계 3,390,000,000원(원고 주장에 의하면 3,33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마.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

1) J은 2021. 9. 2. 위 4개 회사에게 「2021. 8. 23.자로 알린 앞서 본 별도의 사채 차용행위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예금계정상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사실이 위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30일의 치유기간을 부여하며, 만약 치유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즉시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통지하였다.

2) 위 4개 회사가 위 통지를 수령한 후에도 P의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자, J은 2021. 9. 24. 다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치유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후에도 치유가 되지 않자 2021. 9. 28. 대주인 원고의 대리기관 자격으로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통지는 그즈음 위 4개 회사에 도달하였다.

바. 주식근질권의 실행

J은 앞서 본 각 근질권설정 채무자들에게, 2022. 1. 26. 위 가압류결정 등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실행을 예고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2022. 2. 15.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치유되지 않았고, 위 각 4개 회사가 그 사이에 신주를 발행하였음에도 신주에 대한 추가 근질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식근질권을 실행하므로 그때부터 근질권설정 주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여 그 통지는 그즈음 위 4개 회사에 도달하였다.

사. K은행의 가압류

K은행은 위 4개 회사의 위와 같은 예금인출이 원고의 근질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2022. 4.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4개 회사가 인출해간 금액을 전액 지급한 다음, 2022. 5. 13. 위 4개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2017. 12. 20. 예금근질권에 의한 일부채무금) 각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위 4개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대출약정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연대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사건진행내용),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예금근질권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태양광발전소 관리운영 지원요청), 갑 제8호증의 1, 2(이메일 및 출금목록), 갑 제9, 10호증(치유요청공문), 갑 제11호증(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각 결정),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각 근질권실행예고통지), 갑 제27호증(하도급계약서), 갑 제32호증(2022. 11. 30.자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발생 현황),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각 결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위 4개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도로 사채를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사전에 원고 측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위 4개 회사의 예금계정상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위 4개 회사가 그 치유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대리기관 J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통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 4개 회사가 원고에게 질권이 설정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된다.

2) 원고는 위 4개 회사의 채무 중 일부인 각 3억 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 1)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이 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를 근거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려면 위 4개 회사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원고 측은 위 4개 회사가 대출받아 놓은 금액에서 적시에 관리운영비가 출금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운영비의 출금을 거부하여 의도적으로 위 4개 회사를 자금경색에 빠트렸다.
- 2) 위 4개 회사는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의 금융기관과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의 리파이낸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P와 사이에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본안소송을 취하하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까지 작성 및 체결하였으나, J의 지시를 받은 Q증권의 R 이사가 위 합의서 체결 다음날인 2022. 11. 2. P로 하여금 합의를 파기하도록 종용하여, P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 3) 위 4개 회사는 원고 및 J의 의도적인 자금 출금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i) 부득이 O로부터 발전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ii) O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부득이 계좌개설기관인 K은행의 승인 하에 예금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그 돈과 주식 신주발행으로 마련한 인수대금으로 O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였다.
-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사정, 즉 '①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 ② 이 사건 회사가 예금계정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정 및 ③ 신주식을 발행한 사정'에 대하여도 위 4개 회사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결국 위 대출약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4개 회사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5) 설령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1)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존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이행의 유예를 주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 없음이 확실시되는 전형적인 경우,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388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으로 별도로 이를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그 사유의 발생에 있어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신용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하는 법정 또는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4개 회사의 각 담보예금계정들에 대하여 P가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위 4개 회사의 경제적 신용에 관련한 사유로서 위 각 대출약정 제13조 제1항 (너)호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측이 통보한 기한 내에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치유되지 않았으며, 같은 가압류는 위 4개 회사의 예금에 관한 것이므로 그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 측이 이를 이유로 하자치유 통지일로부터 30일의 하자치유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2021. 9. 28.에 한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효하다.

또한 위 4개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 외의 사채를 부담하였다고 자인하고, 추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겠다고 한 사실도 위 4개 회사의 경제적 신용에 관련되는 사유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위 4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소극적 준수사항 중 채무부담금지 조항(제11조)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제13조 제1항 (다)호]가 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측의 위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은 유효하다.

위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 시에 원고가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의 사유로 삼지는 않았으나, 위 4개 회사가 원고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준 K은행의 예금계정에서 2021. 9. 13. 이후 각 예금을 출금한 행위는 위 대출약정 제13조 제1항 (파)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도 해당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은 유효하고, 위 4개 회사의 대출금채무는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 각 사실이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위 4개 회사에게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발전소와 부속시설 건설 및 초기 운영에 소요되는 총투자비의 9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해주고, 위 4개 회사가 이 사건 사업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채무를 총 16.25년에 걸쳐 장기간 상환하는 구조이다.

② 원고는 'E'(이하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이자 대주(貸主)이며, J은 집합투자업자로서 본건 펀드에서 집행되는 자금을 관리할 의무와 대주인 원고의 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③ 원고와 위 4개 회사는, 원고가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하기로 한 "관리운영비"를 관리운영회사인 S(= P의 자회사)가 원고에 대한 출금요청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출약정서 제3조 2항에 위 4개 회사가 '직접'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S가 출금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위 4개 회사의 출금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조 제2항에서 "차주는, 대리기관에게, 다음 인출가능일까지의 소요금액, 유보계정의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 및 필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기성내역서, 청구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별첨 가-1'의 양식으로 된 인출요청서를 제출하여 인출하여야 할 금액을 대리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대리기관은 차주의 증빙서류를 기초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출약정금의 한도 내에서 매회 인출금액을 결정하여 대주에게 '별첨 가-2'의 양식으로 된 인출통보서를 발급하며, 대주는 대리기관의 인출통보서에 기재된 금액 및 인출일자 또는 기간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대출금을 인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4개 회사가 출금받지 못한 대출금의 명목은 대부분 '관리운영비'인 사실, 위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관리운영비'는 운영기간 동안 관리운영회사가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회사 일반사무업무에 대한 대가(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유지보수비, 대수선비, 운영기간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와 제경비 등 포함)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III '관리운영비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 위 4개 회사는 위 대출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7. 8. 11. S와 사이에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4개 회사와 S는 향후 위 4개 회사가 S에게 지급하는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 즉 관리운영비를 원고가 대출금으로 지급할 경우 원고가 하는 그 인출절차를 S가 대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제4호증의 1 내지 4중 제2조 제1항 제4호 자목 - "대출약정서상 위탁자의 자금인출요청 및 인출된 자금의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대출약정서 제3조 제2항의 기재는 위 4개 회사가 관리운영비 인출의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는 점만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위 대출약정서 이미 체결되어 있던 위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S가 대행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는 이미 위 대출약정에서 "관리운영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위 4개 회사와 S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사회 일반에서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일으킨 다음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은닉하거나 소비하고 대출금채무를 면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거액을 투자한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은 사실상 변제의 담보가 위 4개 회사의 사업체 그 자체뿐이므로 대출금이 대출 명목대로 지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리 감독 방법의 일환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청구인(= 이 사건에서는 S)과 감독자(= 이 사건에서는 4개 회사)를 두어 이들이 서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 수령할 권한이 있는 업체나 당사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S)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관리하고, 이는 이른바 일종의 직불제의 장점을 도입한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부담이 극도로 큰 사업에 투자한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기하거나 완화해줄 수 없는 지급절차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①, ②, ③의 각 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4개 회사의 출금요청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4개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측의 실무자들은 위 4개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 앞서 본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S가 출금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는 관리운영비를 인출해줄 방법이 없고, 증빙이 갖춰지면 대금 지급이 가능함을 수차례 확인시켜 주었다(갑 제19호증).

㉡ 위 4개 회사들이 제출한 출금요청서에조차 그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다(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는 위 4개 회사가 제출한 출금요청서이긴 하지만 실제 그 비용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대출금인출은 2017. 12. 20., 2018. 9. 17., 2019. 3. 14. 3차례 그 인출을 승인하였다(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 위 4개 회사의 실질사주 측은 P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설의 공사 일부분을 O가 하도급받게 하여 그 공사 이익을 취하고,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S에게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관리운영으로 인한 보수까지 얻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변론 전체의 취지).

㉤ 위 4개 회사의 실질사주인 T는 원고 측 직원(U)과의 대화에서, P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위 U가 P의 하도급업자들이 위 4개 회사에 직불요청을 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자금인출 요청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갑 제19호증).

(2) 그 외의 피고들의 다른 주장, 즉 위 4개 회사가 P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하면 P의 앞서 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령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하자치유기간 내에 위 4개 회사가 해방공탁 등으로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이상 P의 가압류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체의 관리운영을 위 4개 회사가 직접 맡아 하겠다고 원고 측에게 제의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본 원고 측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이는 위험도가 높아 원고 측이 허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측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측이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J이 Q증권에 지시하여 2022. 11. 2. P로 하여금 위 4개 회사와의 리파이낸싱을 위한 합의를 파기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그와 같은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과 같은 판단에 따르면, 앞서 본 원고 측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어

원고와 위 4개 회사의 대출약정상 위 4개 회사의 각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각 300,000,000원은 위 4개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들은 각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중 일부인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 통지일인 2021. 9. 28.부터(이 사건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 통지가 도달된 날은 증명되지 않으나, 그 당시 이미 위 4개 회사가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서 청구하는 금액은 위 4개 회사의 전체 미변제 대출원리금액보다 적으므로 지연이자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피고 1.에 대해서는 2022. 3. 27., 피고 2.에 대해서는 2022. 3. 11., 피고 3.에 대해서는 2022. 3. 23., 피고 4.에 대해서는 2022. 3. 2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8.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해근